

‘AI가 사고를 일으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또 보험에 의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AI 등장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오작동하여 보행자를 충돌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수술 로봇이 오작동하여 환자가 중태에 빠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서빙 로봇이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로보어드바이저가 잘못된 투자 자문을 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AI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들에 담겨 있는 핵심 쟁점은 동일하다. 인간의 지적 능력과 유사한 지능을 가진 기계가(기계지능), 인간의 개입을 요하지 않는 상태에서(자율성) 스스로 학습 및 개선을 하면서(적응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범용성) 일정한 출력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출력물 제공)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우리 법질서 관점에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제시되어 왔다.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서 AI가 책임을 져야 한다. AI를 이용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으니 AI를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드웨어 제조사는 잘못이 없으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나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등 질문만큼이나 다양한 답변이 존재한다. 그러나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AI 사고 책임 문제에 대한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는 AI 자체가 새롭고 독특한 위험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래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단일한 해결책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상적인 사고로 여겨지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만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이 문제 되고, 차량 결함이 사고 원인인 경우 가해 차량 차주와 자동차 제작사 사이에는 제조물책임 및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등이 문제 된다. 따라서 누군가 만약 AI 사고 책임과 보상 문제에 대해 단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AI 사고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각 분야별 현황 및 특성을 디테일하게 반영하여 마련된 각종 안전기준과 가이드라인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제작이나 수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과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때 지켜야 할 운행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도 기존 자동차와 동일하게 차주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차 특약을 별도로 마련하여 해킹사고나 시스템 오작동 사고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신설되어 자율주행차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등 자율주행차 사고 원인 규명, 통계 수집 노력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 단계 및 활용 상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제도 변경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관련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의료, 금융 등 AI를 활용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²⁴⁾

AI 사고 피해 구제 체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언젠가는 AI 사고에 대한 포괄적 피해 구제 체계로서 책임법제와 보험제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비한 논의를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AI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영역별 피해 구제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AI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피지컬 AI의 경우 물리적 실체가 있어 오작동 시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바, 공공장소에서 활용되는 피지컬 AI에 대해 책임보험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영역에서의 사고를 보상하는 기존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을 확장하여 AI 사고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 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차보험이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최근 법제화된 실외이동로봇보험이 있다.

둘째, 분야별 책임법제의 내용을 AI 사고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자배법이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지, 현행 의료법 및 의료배상책임 관련 판례의 법리가 진단 및 수술 로봇 관련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 AI에 의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124) 황현아(2024b), pp. 7~8

는 분야별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연구들을 보험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위험에 대한 정의, 분류, 평가를 통해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별 AI 위험을 구체화하고, 위험 유형별로 보험을 통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I 위험을 보험을 통해 담보함으로써 AI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을 정립함과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AI 사업자들이 사고와 책임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AI를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I 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는 이러한 AI 위험관리 체계의 하나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므로, 전체적인 AI 위험관리 체계 수립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